부 산 지 방 법 원

제 4 - 3 형 사 부

판 결

사 건	2025노1827 가. 상해 나. 모욕
피 고 인	1.가.나. 정0영 (8*****-*******) 주거 부산 등록기준지 통영시 2.가. *** (******-*******) 주거 등록기준지
항 소 인	검사(피고인 정0영에 대하여) 및 피고인 ***
검 사	
변 호 인	
원 심 판 결	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. 4. 30. 선고 2024고단958, 2024고단1876(병합) 판결
판 결 선 고	2025. 11. 11.

주 문

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[redacted]

피고인 ***에 대한 [redacted]

피고인 정0영에 대한 공소사실 중 [redacted]

검사의 피고인 정0영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항소이유의 요지

가. 사실오인, 법리오해(검사)

피고인 정0영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, 피해자 ***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, 피고인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, 신고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,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,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,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,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.

나. 양형부당[피고인 *** 및 검사(피고인 정0영에 대하여)]

(삭제)

2. 판단

가. 직권판단

(삭제)

나. 검사의 사실오인, 법리오해 주장 부분(피고인 정0영의 무죄 부분)

원심은 그 판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'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

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'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,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,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.

다. 피고인 ***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

(삭제)

3. 결론

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정0영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,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.

[다시 쓰는 판결이유(피고인 *)]**

(삭제)

(공소기각 부분 삭제)

재판장 판사 _____

판사 _____

판사 _____